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애주야간보호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에게는 준용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 (사업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에서 주 · 야간 보호를 통하여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적응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및 식사, 배변, 양치 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에서 주 · 야간 보호를 통하여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적응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및 식사, 배변, 양치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22명으로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요양1.2.3.4.5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안내문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6 장 서비스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7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주.야간보호서비스 :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에서 주 · 야간 보호를 통하여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적응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및 식사, 배변, 양치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9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기타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면책) 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사유가 된다.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제 8 장 운용규정의 개정 및 절차

제21조 (개정방법) 변경사유가 발생시 대표자 관리책임자, 재직종사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 변경에 대한 협의 후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별도의 정함을 둘 수 있다.

제 9 장 인력관리

제22조 (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현장직으로 구분한다.
① 관리직 :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 사무원
② 현장직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운전원, 기타

제23조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